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항·비행장 실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금지 및 퇴치등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54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01754)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항·비행장 내부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금지 및 퇴치등 (안 제56조 및 제69조)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취지	5
2) 「공항시설법」에서 이를 규율함이 적절한지	6
3) 「공항시설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경우 고려사항	8
① 제안취지를 반영한 표현의 수정 필요	8
② 퇴치·추락·포획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9
다. 국토교통부 의견	11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0175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5.
3. 회 부 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등).

Ⅲ. 검토의견

1. 공항·비행장 내부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금지 및 퇴치등(안 제56조 및 제69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항·비행장 내부에서 비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6조(금지행위) ①·② (생략)	제56조(금지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	③ ----- ----- ----- ----- ----- -----비행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현행	개정안
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u>접근하거나 침입한</u>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u>항공안전에</u>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⑤ (생략) ⑥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¹⁾,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²⁾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	6항에 따른 승인----- -----<u>접근 또는 침입하거나 공항·비행장의 내부에서 비행하는</u>----- -----<u>안전</u>-----.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항·비행장의 내부에서 비행하는 행위(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u> 5. -----<u>제4호</u>----- -----

현행	개정안
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생략)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과태료) ①·②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6조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항·비행장의 내부에서 비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제6항-----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공항시설법」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는 공항시설의 사용을 휴지(休止)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항공안전법」³⁾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역 등을 의미하는 관제권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단순히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2)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항행안전시설(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때 해당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7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용 및 사용기준(이하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제16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현행 「공항시설법」은 이와 같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비행 승인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비행장의 실외에 대해서는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면 퇴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추후 벌금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공항·비행장의 실내에 대해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공항·비행장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서 퇴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공항시설법」에서 이를 규율함이 적절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항 또는 비행장뿐만 아니라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 다른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

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바, 관련 내용을 공항 또는 비행장에 대해서 규율하는 「공항시설법」⁴⁾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항행을 도모하는 「항공안전법」⁵⁾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도 「항공안전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규정하여 공항·비행장의 실외 등 관제권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에 대해서 비행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점⁶⁾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4) 「공항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구역·통제구역·주의구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3) 「공항시설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경우 고려사항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항·비행장 실내로 한정하여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따라 「공항시설법」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① 제안취지를 반영한 표현의 수정 필요

먼저,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항·비행장의 내부”에서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공항·비행장의 내부 중 공항·비행장시설의 실외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관제권에 해당하여 「항공안전법」 제127조가 적용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고, 현행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른 퇴치, 추락, 포획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제안이유에 따르면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

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 그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항시설·비행장시설의 실내”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② 퇴치·추락·포획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음으로, 공항시설·비행장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퇴치·추락·포획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무단 운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퇴치·추락·포획 등의 조치는 일종의 경찰상 즉시강제⁷⁾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하여 현행 「공항시설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초경량비행장치가 무단으로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해당 비행장치가 그대로 비행하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제27판」 p.511

경찰상 즉시강제란 경찰상 장애가 존재하거나 장애의 발생이 목전에 급박한 경우에 성질상 개인에게 의무를 명해서는 경찰행정목적 달성을 수 없거나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경찰행정기관이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을 말한다.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공항시설·비행장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이착륙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지 않은바, 그에 대해서 퇴치 등의 조치를 취할만큼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공항 여객터미널 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퇴치 등의 조치 그 자체로 인하여 또는 그에 따른 해당 비행장치의 추락으로 인하여 자칫 인명피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공항시설·비행장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단비행을 금지하고, 만일 무단비행이 발생하면 조종자에 대해 이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항시설·비행장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퇴치·추락·포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공항시설·비행장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비행하는 초경량비행

장치에 대해서 퇴치·추락·포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56조제3항을 개정하려는 경우 지난 2024년 2월 동 조항이 개정되어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⁸⁾이 8월 시행예정인바, 이를 개정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현재 터미널 등 공항시설 실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금지와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부재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나,

현재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비행장 울타리 경계 안쪽의 공중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구역으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개정안 상 공항·비행장의 내부는 공항·비행장 울타리 경계 안쪽의 공중을 포함하여 해석되어 제제가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항·비행장시설의 실내로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8)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금지행위) ③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퇴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항운영자
3.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문 의 처
02)6788-5580